

제145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의 안 상 정

(일 반 의 안 2건)

거 창 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08 ~	필리핀 카르모나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3
2008 ~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9

필리핀 카르모나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의안 번호	2008~
----------	-------

제출일자	2008. 2.
제출자	행정과장

□ 제안이유

- 동남아시아의 영어권이자 세계적 벼품종개발연구소가 소재해있는 필리핀(카르모나시)과 자매결연을 추진 상호간 교류를 통하여 원어민활용 용이, 어학연수 등 평생 교육도시로서 위상을 재고하고, 농업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 자매결연을 통해 양군·시민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교류와 협력으로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그동안 교류상황
 - 카르모나시장 일행 거창군 방문 : 2007. 6. 16
 - 카르모나시에 실무협의 제안서 송부 : 2007. 6. 20
 - 카르모나시장 실무협의단 초청 : 2007. 6. 26
 - 실무협의단 방문 : 2007. 7. 9 ~ 7. 12
 - 우호교류 협약체결 : 2007. 10. 25
 - 거창중앙고등학교와 카르모나시 공립고등학교간 자매결연 : 2007. 12. 14
 - 중학생 영어경시대회 성적우수 학생 어학연수(16명) : 2008. 1. 3 ~ 1. 30
- 향후 추진계획
 - 2008. 4~5월경 자매결연 체결

□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 필리핀 카르모나시와 - 자매결연 체결 계획

대한민국 거창군과 필리핀 카르모나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 양
군·시민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교류와 협력으로 공동
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1. 교류추진 필요성

- 우리군은 명실상부한 서북부경남의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영어사용 국가이며, 동남아시아의 세계적 베품종개량연구소가 소재해 있는 필리핀(카르모나시)과 자매결연을 추진 상호간 교류를 통하여 원어민강사 확보, 어학연수 등 평생교육도시로서 위상을 재고하고 농업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2. 교류실적

- 카르모나 시장 일행 거창군 방문 ----- 2007. 6. 16
- 카르모나시 방문제의
- 카르모나시에 실무협의 제안서 송부 ----- 2007. 6. 20
- 카르모나시 실무협의단 초청 ----- 2007. 6. 26
- 실무협의단 카르모나시 방문 ----- 2007. 7. 9 ~ 7. 12
- 우호교류 협약 체결 ----- 2007. 10. 25
- 거창중앙고등학교와 카르모나시 공립고등학교간 자매결연 -- 2007. 12. 14
- 2007 중학생 영어경시대회 성적우수학생 어학연수
- 기간 : 2008. 1. 3 ~ 1. 30(4주간)
- 대상 : 16명(영어경시대회 성적우수 학생)
- 장소 : 필리핀 마닐라 사우스우드 IEA어학원(필리핀 카르모나시 소재)

※ 거창전문대학과 필리핀 대학과의 교류

- MOU체결 : 3개대학(마푸아공대, 세인트루이스대학, LCCM대학)
- 교류내용(어학연수) : 하계 - 2회 158명, 동계 - 1회 35명

3. 향후 추진계획

- 거창군 의회 제145회 임시회시 자매결연 동의안 의결 후
- 자매결연 체결 : 2008. 4~5월경
⇒ 거창중앙고등학교의 축제(향원제)시 자매결연학교(필리핀 공립 고등학교)를 초대함에 따라 동 기간에 카르모나시장 초대 자매결연 체결

4.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외국 지방자치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제1항10호)

5. 교류효과

교류분야	거창군	카르모나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학습관련 원어민 활용 용이 - 비교적 낮은 임금 적용(1폐소≒20원) ○ 자녀 조기 유학 용이 - 강사신분보장에 따른 신뢰 및 경비절감 효과 * 서울청솔학원 경유시: 300만원/월 소요 * 직접 추진시 유학경비 50%정도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창출(인력수출) - 달러 확보 용이 ○ 많은 연수생 확보 - 경제적 도움 - 일자리 창출 효과 - 중간 마진 축소로 이윤증대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예특작 및 선진농업기술 보급 - 하우스농업 및 기계화 농업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작 기술 및 선진농업기술 습득 - 농가 소득 증대

6. 참고자료

- 카르모나시 현황
- 거창군 · 카르모나시 대비표
- 카르모나시 위치도

□ 카르모나시 현황

○ 기본현황

- ▶ 인구 : 60,000명(거창군 64,000명) / 인구증가율: 3.32%
- ▶ 면적 : 30.9km²(804.09km²)
- ▶ 마닐라에서 7km 떨어진 곳에 위치
- ▶ 행정구역 : 시청과 14개 barangay(동)으로 구성
- ▶ 시청예산 : 60억정도(정부보조 13%정도) 『20원 ≙ 1페소』
 - ※ 시청과 동사무소 별도 회계 / 주소득원 : 사업세(53%)
- ▶ 공무원수 : 400여명(시청 200명)
- ▶ 고용률 : 65%
- ▶ 학교현황 : 유치원 28, 초등학교 16, 고등학교 4, 대학 2
 - ※ 문맹률:11%
- ▶ 주업 : 농업(609ha)
- ▶ 기타 : 36홀 골프장, 경마장, 소형F3경주장, 10개 공단(200여개 공장)

○ 일반현황

- ▶ 필리핀은 한국의 70년대초 수준
 - 빈부격차가 심하고 카르모나 등 마닐라 주변도시엔 부자촌이 많음
- ▶ 현시장(LOYOLA) 재임시부터(10여년전)부터 발전속도 가속화
 - 2005년도 부가가치세 17%이상 증가(사업소세 54%증가)
- ▶ 카르모나시장의 중점적 시정 추진 계획
 - 관광, 레저, 산업단지 조성(한국기업 20개정도 유치)
 - 실버타운 조성계획 : 15,000평
- ▶ 공무원 보수 : 25만~40만원 정도
 - 교사보수 : 35만원/월 ~ 45만원/월

□ 거창군 · 카르모나시 비교표

구 분	거 창 군	카 르 모 나 시
위 치	◦ 우리나라 남부내륙의 중심지역	◦ 마닐라에서 7km떨어진 까르떼 지역(도)에 위치
면 적	◦ 80,409ha	◦ 3,092ha
인 구	◦ 64,000명	◦ 60,000명
기 후	◦ 표고 200m이상으로 기온의 연교차 및 일교차가 심한 내륙고산분지임	◦ 년평균 27℃ - 우기 : 11월~4월 - 건기 : 12월~4월
주생산	◦ 농업	◦ 농업(쌀)
축 제	◦ 국제연극제:2007.7 ~ 8월 (20일간)	◦ 솔테노페스티벌:2007.5(3년마다) - 내용 :추첨하여 당선자에게 경작지 3년간 무상임대
기 타	◦ 청정 무공해 농산물 재배지임. ◦ 거창화강석 특화육성 - 국내석중 가장밝은 회백색이며 일본노무라빌딩, 수원시현충탑시공	◦ 10개 소규모 공단에 200개공장 ◦ 관광투어리즘:36홀골프장 경마장,카지노,소형(F3)경주장 ◦ 한국교포 운영 사업체 - 공장1개소(필름생산,담배포장지) - 영어학교(30명정도)

필리핀 카르모나시 지도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안 번호	2008 ~
----------	--------

제출연월일	2008. 2. .
제 출 자	경 제 과 장

1. 제안이유

거창화강석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한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장현황

- 위 치 :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5-2번지
- 규 모
 - 부 지 : 460m²(무상임대 : 화강석재 강신곤)
⇒ 부지임대 : 2007. 7. 1 ~ 2016. 6. 30(9년간 계약체결)
 - 건 물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지상 1층 / 392m²
- 준 공 : 2007. 12. 28(준공식 : 2008. 1. 11)
- 주요시설 : 건 물 / 광촉매 코팅석 생산설비 등 --- 붙임1 참조
- 용 도 :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 생산
- 소요예산 : 451백만원(기계설비 309, 건축물 138, 부대시설 등 4)

□ 운영계획

- 방 침
 - (재)거창화강석 연구센터에 사용·수익허가를 통한 원활한 관리·운영
 - (주)거창석재조합과 상호 협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업 추진
⇒ (재)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수익사업을 통한 자립화 지원
- 개 요
 - 사업내용 :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수익허가
 - 허가목적 :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의 원활한 생산 및 마케팅
 - 허가권자 : 거창군청 경제과장(행정재산 재산관리관)
 - 허가대상 : (재)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이사장
 - 허가물건 : 부지 / 설비 / 건축물 / 부대시설 --- 『붙임 1』 참조
 - 허가기간 : 사용·수익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
 - 사업추진 : (재)거창화강석 연구센터와 수의계약

○ 추진계획

- 사용·수익허가 : (재)거창화강석 연구센터에서 신청 ⇒ 처리
 - 조건부 허가 : 재산보존 책임 / 원상태로 반환 등
-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 : 허가와 동시 부과
- 손해보험증서 징구 :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방안

□ 《 제 1 안 》 : 부 과

- 근 거 :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제1항

〈 근 거 내 용 〉

-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 산출금액 : 451,583,580원(재산가액)× 50/1,000(요율) = 22,579,170원

□ 《 제 2 안 》 : 면 제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4호

〈 근 거 내 용 〉

- 법 제24조 제1항 제4호 :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수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있는 때
- 시행령 제17조 제4항 : 제17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4호 : 당해 시·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 <제1안>과 같이 사용료 부과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친환경 기능석재공장은 실험생산을 위한 파일럿 플랜트임
 - 생산제품에 대한 특허와 신제품 인정을 통한 생산제품의 안정화 실험 공장
 - ⇒ 많은 수요에 대비한 양산공장 설립 필요 : (주)거창석재조합
- 초기 효율적인 마케팅을 위해 수익률 Zero화 【(재)거창화강석 연구센터】
 -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우선
- 관련규정대로 사용료 부과 시 원활한 가동 애로
 - 사용료 관련 예산 미확보 / 운영비 추가 지원 요청 예상

○ 대책

- 사용·수익허가대상인 (재)거창화강석 연구센터도 재정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출연기관으로 어려운 석재산업의 실물경기 부양과 자립화 지원을 전제로 한 사용·수익허가사업으로
- 향후 경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적립을 통해 (재)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자립화 자금으로 활용케함 으로서 이에 맞게 출연금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임(사용료 부과 효과 대체)
 - ⇒ 군의회 동의시 사용료를 면제하고
 - ⇒ 매년 사업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여건에 맞게 조정 부과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제1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4호

□ 소요예산 : 100백만원, 제2기 신활력사업 세부사업 승인후 예산반영 예정
⇒ 공장 운영비 : 인건비 / 재료구입비 / 공공요금 등

□ 합 의 :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붙임 1

□ **사용·수익허가 재산목록**

○ **토 지**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비 고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5 - 2	공장용지	460m ²	

○ **건 물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지상1층, 392m²**

세부시설명 면 적(m ²)	공 장	사무실	기계실 및 암석물성 시험실	화장실
392	302	26.4	56.1	7.5

○ **기계설비 목록**

설 비 명	용 도	규 격	수 량	비 고	
주 설 비	거 치 대	석재 투입장치	1,120mm×2,000mm× 800mm	1대	
	세 척 대 (Water shower)	석재에 묻어있는 이물질 을 고압의 물로 세척 하는 장치	1,120mm×2,000mm× 2,000mm	1대	
	공기분사대 (Air blowing)	세척이 끝난 석재 표면의 물을 고압의 공기로 제거하는 장치	1,120mm×2,000mm× 2,000mm	1대	
	건 조 대 (Dryer)	석재에 열을 가하여 석재표면을 가열하는 장치	1,120mm×2,000mm× 2,000mm	1대	
	광촉매코팅기 (Photo-catalyst coater)	석재에 광촉매 용액을 코팅하는 장치	1,120mm×2,000mm× 2,000mm	1대	
	열처리대 (Heat treatment)	코팅이 끝난 석재에 열을 가하여 광촉매 코팅층의 경도를 증진 시키는 장치	1,120mm×2,000mm× 2,000mm	1대	
	적 재 대	코팅된 석재를 반출하는 장치	1,120mm×2,000mm× 800mm	1대	

설비명		용도	규격	수량	비고
공압설비	공기압축기 (Screw compressor)	주설비에 사용되는 고압의 공기를 제조하는 장치	AC 380V, 22Kw FAD : 3.13m ³ /min W.P : 9.0kgf/cm ²	1대	
	냉동식 건조기	공기압축시 발생하는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	F.C : 3.85Nm ³ /min W.P : 9.0kgf/cm ²	1대	
	흡착식 건조기	고압공기 중의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	F.C : 3.65Nm ³ /min D.P : -25 μ m 이하	1대	
	에어탱크 (Air tank)	압축된 공기를 저장하는 장치	M.P : 9.9kgf/cm ² G W.P : 9.0kgf/cm ² G	1대	
정수설비	고압펌프	세척에 사용되는 고압의 세척수를 공급하는 장치	380V, 1.2Kw S.P : 7kgf/cm ² C : 24,400kg/h	1대	
	정수설비	고압펌프를 통하여 제공되는 세척수의 이물질 제거하는 장치	마이크로필터: <25 μ m 압력조정기: 7kgf/cm ²	1대	
집진및탈취설비	집진기	공정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장치	820mm×820mm×1,780mm	1대	
	광반응식스크러버 (탈취설비)	광촉매 코팅용액 성분중 알콜성분을 분해하는 장치	1,700mm×400mm×1,400mm	1대	
위생시설	변기		양변기 소변기	2개소 1개소	
	세면대		세면대	1개소	
	정화조		1m ³ /1일	1식	

공유 재산 (유상) 사용 허가서

○ 재산의 표시

- 위 치 :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5-2번지
- 규 모
 - 부 지 : 460m²(무상임대 : 화강석재 강신곤)
 - 건 물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지상 1층 / 392m²
- 주요시설 : 건물 / 광촉매 코팅석 생산설비 등 --- 『붙임 1』 참조

○ 신청인 현황

- 주 소 :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5-10번지
- 성 명 : (재)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이사장(인)

2008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붙임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붙 임 : 허가조건 1부

2008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사업용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08년 월 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당해연도 사용료 산정금액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 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 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사억오천일백오십팔만삼천오백팔십원정(W451,583,580)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1개월이 내에 본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군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사용시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군에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군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등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군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